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56

발의연월일: 2022. 11. 24.

발 의 자:이종배·구자근·권명호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성원

성일종 · 송석준 · 안병길

유상범 • 윤두현 • 이채익

태영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8조(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)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.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폭으로 인상 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%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'2022년 12월 31일'에서 5년 연장한 '2027년 12월 31일'로 수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45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	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
전부개정법률 부칙	전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108조는 <u>2022</u>	제2조(유효기간) <u>2027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	<u>년 12월 31일</u>
다.	